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산림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채석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임업직불제 정책 등 산림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등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1명, 8급 1명)을 산림청으로 재배정하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며, 산림교육기획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고,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분장하던 산림일자리 정책 등의 업무를 산림복지국장이, 산림복지국장이 분장하던 도시숲·정원·산림경관 등의 업무를 산림보호국장이 분장하도록 각각 조정하며,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3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관리의 책임성 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에 신설되는 산림재난통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관리

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숲·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8.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9.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제17조제1항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2023년 1월 27일”을 “2025년 1월 27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11”을 “321”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6”을 “316”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97”을 “305”로 하며, 전문경력관 “3”을 “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41”을 각각 “1,039”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5”를 “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34”를 “1,033”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의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의2제1항 관련)

1. 산림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산림보호국 1개 과	1명
산림보호국 1개 정책관등	0명

[별표 4]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5조제4항 관련)

수목원조성사업단(존속기한: 2025년 1월 27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생략)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u>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u>	<삭제>
12. <u>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관리</u>	<삭제>
13. <u>녹색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u>	<삭제>
14. ~ 22. (생략)	14. ~ 22. (현행과 같음)
23. ~ 26. 삭제	
27. <u>임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u>	<삭제>
28. ~ 34. (생략)	28. ~ 34. (현행과 같음)
제10조(산림복지국) ① (생략)	제10조(산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도시숲·생활숲 및 정원(庭</u>	<삭제>

<u>園)의 조성·관리</u>	
<u>11.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u>	<u><삭 제></u>
<u>12.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u>	<u><삭 제></u>
<u>13.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u>	<u><삭 제></u>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u>
<u><신 설></u>	<u>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관리</u>
<u><신 설></u>	<u>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u>
제11조(산림보호국) ①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u><신 설></u>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도시숲·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관리</u>
<u><신 설></u>	<u>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u>

<u><신 설></u>	<u>8.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u>
<u><신 설></u>	<u>9.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u>
10. ~ 21. (생 략)	10. ~ 21. (현행과 같음)
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 ----- ----- 2025년 1월 27일-----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11</u>	<u>321</u>	+10
·	·	·	
·	·	·	
일반직 계	<u>306</u>	<u>316</u>	+10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3급 또는 4급 이하	<u>297</u>	<u>305</u>	+8
전문경력관	<u>3</u>	<u>4</u>	+1
·	·	·	
·	·	·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41</u>	<u>1,039</u>	-2
일반직 계	<u>1,041</u>	<u>1,039</u>	-2
고위공무원단	<u>5</u>	<u>4</u>	-1
3급 또는 4급 이하	<u>1,034</u>	<u>1,033</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